

2026년 2차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오염방제기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모집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6-29호, 2026년 2차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결과 오염방제기관 분야에 미충원 인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근거하여 해당 분야의 인력을 추가로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해양경찰청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4개 직위, 총 22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오염기관A	해양수산서기보	3명	정년 적용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오염기관B	해양수산서기보	9명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오염기관C	해양수산서기보	8명	정년 적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오염기관D	해양수산서기보	2명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오염기관A 오염기관B 오염기관C 오염기관D	오염방제기관	해양수산서기보	○ 방제함정 승선·운항 및 해양오염 및 화학사고 방제 대응 업무 ○ 해양오염 예방 업무 및 선박·해양시설 출입검사, 조사 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2.18.) 기준]

채용분야	직급별 요건	
오염방제기관	자격증	○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경력채용)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원서접수 시 선택한 자격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응시원서 제출 이후에는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응시자격요건의 기재 착오, 중복 선택 및 미선택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2.18.)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채용분야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자격증'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폐지된 자격증이라도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자격증으로 인정함

다. 가산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 9. 18.) 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은 4명 이상 채용분야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시험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⑦ 천안함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의사상자

- 가점은 10명 이상 채용분야에만 적용되며,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아래 의사상자는 시험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1. 만점의 5% 가산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

2. 만점의 3% 가산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경우는 그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할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가점 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적용 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가산 요건을 반드시 선택 및 기재해야 함(중복 적용 불가)
※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귀책 사유임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5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8. 26.(수) / 9. 14.(월) ~ 18.(금)	'26. 10. 24.(토) * 합격자 발표 : 11. 13.(금)	'26. 12. 4.(금)	'26. 12. 14.(월) ~ 12. 18.(금)	'26. 12. 24.(목)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일정 등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경찰청(응시 지방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 게시 예정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예정

6 시험 방법

가. 필기시험

- 필기시험 실시 분야 및 시험과목

직급	직렬	직류	채용분야	시험과목	
				1차	2차
9급	해양수산	선박기관	오염방제기관	▶ 물리	▶ 선박일반, 선박기관

- 채용분야별 총 3과목으로 1차 및 2차 시험을 병합 실시(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0문항, 총 시험시간 60분)
- 답안공개 및 이의제기
 - 가답안 공개 : 2026. 10. 24.(토) 13:00
 - 이의제기 : 2026. 10. 24.(토) 13:00 ~ 10. 27.(화) 13:00, 방법 별도 안내
 - 확정답안 공개 : 2026. 10. 29.(목) 13:00
 -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및 해양경찰청·응시 지방청 누리집에 답안 공개
- 성적공개 : 2026. 11. 4.(수) 10:00 ~ 11. 5.(목) 18:00
-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선발(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1차 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제출기한 등 상세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아래 서류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이용하여 제출

- ① 제출서류 총괄표
- ② 응시자격요건을 증빙하는 해기사 자격증 사본
- ③ 주민등록초본(상세), 남자는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 ④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전형위원 제척·기피로 활용)
- ⑤ 개인정보제공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합격자가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모든 증빙서류는 화면캡처본 및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 중 채용이 확정된 사람을 제외하고, 원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 기간('26.12.24.~'27.1.14.) 내 신청.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전자우편(kcgexam@korea.kr) 제출 <붙임 3> 참조

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해양경찰 인재상 적합 및 직무 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평가요소에 대해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기간 : 2026. 9. 14.(월) 10:00 ~ 9. 18.(금) 17:00 <5일간>
- 방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 이용
 - 접수마감일 17시 정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어만 원서 제출이 완료됨
 -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 내용 변경 및 원서접수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제출을 완료하거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 수정 불가
 - [마이페이지]→[응시현황]→[원서접수내역] 메뉴에서 정상 접수 반드시 확인
- 응시수수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 8·9급 5천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됨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④ 「민법」상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응시표 출력 : 2026. 9. 23.(수), 09: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마이페이지 이용)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26. 9. 19.(토) 09:00 ~ 9. 21.(월) 18:00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제출 이후 응시자격요건 변경은 불가하며, 자격요건 기재 착오 및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교육 및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교육 입교예정일 : 2027. 1. 10.(일)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 예정일 :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임용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 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 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 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 지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명	연락처	관서명	연락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032-728-8916,8716	남해지방해양경찰청	051-663-2416,2616
서해지방해양경찰청	061-288-2521,2416	동해지방해양경찰청	033-680-2416,2716

【「국가공무원법(시행 2026.10.22.)」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2조(임용결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라목 및 같은 조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오염기관A 오염기관B 오염기관C 오염기관D	오염방제기관	해양수산서기보(9급)	22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주요 업무	○ 해양오염 예방 활동 및 방제 대응 업무 ○ 선박·해양시설 출입검사 및 오염행위 조사·단속 ○ 방제함정 (화학방제함정) 승선 및 운항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력 등
-------	--

필요 지식	○ 해양오염 관련 법령 및 조사·단속 절차에 대한 이해 ○ 해양오염 사고 대응 및 방제기술에 관한 지식 ○ 방제장비 운용 및 현장 안전관리 역량 ○ 방제함정 운항을 위한 기관 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희망자에 한하여 작성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채용담당기재	접수일자	※ 채용담당기재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채용 서류를 보관하는 기관에서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해드립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보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